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산업단지개발추진단(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조례 제2028호(2013.03.11.)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산업단지개발추진단 존속기한 만료일 연장
 - 당　초 : 2013.03.11. ~ 2016.02.29.까지(3년)
 - 1차연장 : 2013.03.11. ~ 2017.08.31.까지(4년 6개월)
 - 2차연장 : 2013.03.11. ~ 2018.08.3.1까지(5년 6개월)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
 ○ 입법예고 : 제외대상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의 한시기구로서 존속기한이 2017. 8.31.까지인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승인(2017. 7. 7.)을 받아 존속기한을 재(再)연장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028호)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7년 8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8월 31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